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1. 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연희1 주차장	노외 주차장	서구 심곡동 239-9번지	3,141.6	-	3,141.6	건설부 제1989-690호	
신설	2	연희2 주차장	노외 주차장	서구 심곡동 323-8번지	-	증)1,433.2	1,433.2		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	연희2 주차장	· 신설 : 1,433.2㎡	· 2016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로 어울거리 주변의 주차난 해소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단독주택용지

기 정					변 경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적 (㎡)				위치	면적 (㎡)	
1-27	6,397.1	1	1,433.2	4필지로 대지분할(권장)	1-27	4,963.9	-	-	
		2	308.3				2	308.3	
		3-1	282.3				3-1	282.3	
		3-2	282.3				3-2	282.3	
		4-1-1	194.4				4-1-1	194.4	
		4-1-2	194.4				4-1-2	194.4	
		4-2	388.8				4-2	388.8	
		5-1	443.4				5-1	443.4	
		5-2	329.5				5-2	329.5	
		6	2,042.9	6필지로 대지분할(권장)			6	2,042.9	6필지로 대지분할(권장)
		7	497.6				7	497.6	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기정	주차장1	주차장1 (주차장 E용도)	용도	지정용도 • 별표1의 E 지정용도
				권장용도 -
				허용용도 -
				불허용도 -
			건 폐 율	• 60%이하
			용 적 율	• 250%이하
			높 이	• 5층이하
			형 태	• 별표2의 E
			배 치	• 별표3의 E
			색 채	• 별표4의 E
변경	주차장1 주차장2	주차장1 주차장2 (주차장 E용도)	용도	지정용도 • 별표1의 E 지정용도
				권장용도 -
				허용용도 -
				불허용도 -
			건 폐 율	• 60%이하
			용 적 율	• 별표1의 E 용적률
			높 이	• 5층이하
			형 태	• 별표2의 E
			배 치	• 별표3의 E
			색 채	• 별표4의 E
			건 축 선	• 건축한계선 2m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별표1. 건축물 용도 분류표

구 분	E		
	기정	변경	
지정용도	주차장	주차장	
권장용도	-	-	
허용용도	-	-	
불허용도	-	-	
건폐율(%)	60%이하	60%이하	
용적률(%)	250%이하	주차장1	주차장2
		250%	200%
높이	5층이하	5층이하	5층이하

3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나.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
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
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2)

